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84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11. 1.
3. 회부연월일 : 2024. 11.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실무 단계에서 최저생계비로 특정할 수 있는 예금 판단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모든 예금을 일단 압류하고, 이후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제 받아야 하는 상황임.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예금이 압류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채무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

개정안은 예금자가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하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그에 대한 압류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3(생계비계좌) ① 금고는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금고는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민사집행법」¹⁾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같은 법 시행령상 185만원 이하)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 압류 시점에는 이를 특정하기 어려워 우선 모든 예금을 압류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제하고 있어, 압류 기간 동안 채무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예치할 수 있는 이른바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예금과 가시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계좌의 압류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해당 내용을 새마을금고 등 개별 금융기관들에 관한 근거 법률들에 분산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²⁾ 이를 채권

1)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압류에 관한 일반 법률인 「민사집행법」에 일괄 규정하는 「220416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월 17일 정부로 이송되었고, 1월 31일 공포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 「민사집행법」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 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이에 같은 내용을 담은 「220518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18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8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7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7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7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7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발의되었음.

현행	개정안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 7. (생략) <신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 ----- ----- ---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 -----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333